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5p 번호 : 6	문제-본문	수정 사유	해설 수정
해설편 5p 번호 : 6	문제-본문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감정평가사 1차 전과목 4개년 기출문제집</p> <p>유료 물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5년4기1650, 71656, 71673].</p> <p>04 *** ▶ ㉔</p> <p>정답해설</p> <p>㉔ 제2조 제2항</p> <p>오답해설</p> <p>①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위리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상태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위리 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80년4기3003].</p> <p>③ 부재자의 자에서 재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점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청구할 이 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86년20].</p> <p>④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 11. 26.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에도, 그 이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2. 12. 28.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95년4기12730].</p> <p>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실종선고 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유증의 개시는 그 개시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관리의 처분행위로서 처분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면 전혼의 부활로 인해 후혼은 중혼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p> <p>05 *** ▶ ㉔</p> <p>정답해설</p> <p>㉔ 청산인은 공고된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며,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제40조).</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제1과목 민법 정답 및 해설 5</p>	<p>오답해설</p> <p>① 제45조 제4항, 제42조 제2항</p> <p>② 제74조</p> <p>③ 제40조 제5호</p> <p>④ 민법 제40조, 제41조, 제4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2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민법 그 청산절차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행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74년2006).</p> <p>06 *** ▶ ㉔</p> <p>정답해설</p> <p>㉔ 법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86년가11710].</p> <p>오답해설</p> <p>㉔ 제35조 제1항 제2문</p> <p>㉔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할 기를 썼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관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관한 내의 행위라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2002년2기27088).</p> <p>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2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2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35조 제1항) 또한 사후에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2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006년3기37465).</p>
		수정 사유	오답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p>해설편 44p 번호 : 38</p>	<p>해설</p>	<p>SDI(www.sdi.co.kr)</p> <p>37 ***</p> <p>중요해설</p> <p>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형위허가의 대상 등)</p> <p>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기초의 축출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물 가설에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부지의 정설(정설 : 철폐(정설7) : 성벽(정설7) : 성지(정설7) : 포장 등의 방법으로 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부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비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부지의 정설(정설7)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2호에 따른다. 5. 부지분할 6. 용건을 붙이는 행위 : 이등이 속지 아니한 용건을 1개월 이상 붙이는 행위 7. 조목의 벌채 및 식재 <p>38 ***</p> <p>중요해설</p> <p>㉒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시행한다.</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p> <p>①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지동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또는 신청인가로서 인출(인출7)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정개발자 및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지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시공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p>39 ***</p> <p>중요해설</p> <p>㉓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촉진법」의 함수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제1호)을 포함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1호)</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관리계획의 인가 등)</p> <p>① 사업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분할신청(인가)을 공표된 때에는 분할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서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계획 2. 분할대상지번의 주소 및 설명 3. 분할대상지번 분할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층수(역입(대리) 위약(위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p>44 PART 01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p>	<p>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p> <p>(22년 1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22년 12월 11일 시행)</p>
		<p>수정 사유</p>	<p>법 개정으로 인한 해설 추가</p>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